##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

- 제153조 [겸직금지] KBO의 정관 또는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느 구단에 소속된 임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는 누구든지 다른 구단의 임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를 겸직할 수 없다.
- 제154조 [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] ① 구단 및 당해 구단 임 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는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속 구단 외 다른 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.
  - ② KBO 사무처 임직원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어떠 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.
- **제155조 [금전거래 등 금지]** ①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 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소속 임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허용된다.
- 제156조 [전직제한] ① 소속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속구단과 사이에 제155조 소정의 금전거래 등을 한 구단 임직원, 감독, 코치 또는 선수는 선수계약의 양도 등의 사유로 소속구단이 변경된 경 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관계 등을 청산하여야 한다.
  - ② 감독, 코치 및 선수는 제1항에 따라 소유하던 전 소속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거래를 청산할 때까지 KBO 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.
- 제157조 [위반에 따른 제재] ① 총재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리 그 관계자에게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리그 관계자 중 감독, 코치 및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리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참가활동도 할 수 없다.